

의안번호	2200567
의 퇴 인	한병도 의원
회 답 일	2024.8.29.
추 계 번호	24B09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3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하 “육아기”라 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 미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한병도위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565호)을 통하여 재정소요 여부를 검토하므로 중복 처리하지 않음
2	안 제19조(육아휴직)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는 내용임

- 현행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평균 사용기간은 2023년 기준 각각 8.9개월 및 9.3개월이며,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이 확대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유인이 있음

[표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평균 사용기간

(단위: 개월)

	2019	2020	2021	2022	2023
육아휴직	9.5	9.4	9.5	9.0	8.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5	9.2	9.4	9.4	9.3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와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하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다음의 이유로 추계하기 곤란
- 첫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령기 아동(9~12세)을 키우는 부모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학령기 아동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요를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함
 - 기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의 사용기간 및 수급자 수 등에 대한 정보는 영유아를 키우는 근로자에 대한 자료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모집단의 정보를 왜곡할 여지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대상자” 및 “사용기간”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연령 변경에 따른 “추가 사용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셋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전까지 육아휴직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9년 10월 1일(개정법 시행일)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2019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육아휴직과 별개로 독립된 1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Ⅲ. 부대의견

- 개정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565호) 및 「근로기준법」(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5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 참고자료 I

- (사업대상자 수)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육아휴직 사업대상자 수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사용현황을 토대로 산출

[부표 1]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 2019~2023년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육아휴직 수급자 수	105,165	112,040	110,555	131,087	126,008
남성	22,297	27,423	29,041	37,885	35,336
여성	82,868	84,617	81,514	93,202	90,672

자료: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수급자 수

- (여성) 추계기간 동안 여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2023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에 최근 5년간(2019~2023년) 여성 육아휴직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
- (남성) 추계기간 동안 남성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여성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수의 비중이 매년 3.5%p(최근 5년간 증가율의 평균)을 토대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하였으며, 최대 여성 육아휴직자의 50.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부표 2] 육아휴직 수급자 전망: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육아휴직	남성	47,875	49,605	50,734	51,889	53,069
	여성	97,004	99,211	101,468	103,777	106,139
	합계	144,879	148,816	152,203	155,666	159,208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행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본 추계서에서는 장래에 발생할 육아휴직의 잠재적 수요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최근 4년간(2020~2023년) 사용행태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본 추계서는 사용대상 확대라는 제도변화에 따라 증가할 육아휴직의 사용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의 2024년 예산 산출 근거를 준용하여 2023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자 수에 현행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간(9년) 대비 개정안에 따른 증가 기간(4년)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부표 3]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전망: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수급자 수(기준선, A)	144,879	148,816	152,203	155,666	159,208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 수급자 수 ($B=A \times 4/9$)	64,391	66,141	67,646	69,185	70,759

주: 행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2023년 기준 월평균 지원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1인당 지원단가) 연간 재정소요액을 지급인원으로 나누고, 이를 평균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산출(2023년 기준 1인당 지원단가 약 160만원¹⁾²⁾)
 - ※ 집행액: 1조 7,970억원(2023년 기준)
 - ※ 지급인원: 126,008명(2023년 기준)
 - ※ 지급기간: 8.9개월(2023년 기준)
 - 지원단가는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특성으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1인당 지원단가가 명목임금상승률을 토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 (지원기간) 2023년 기준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8.9개월이며, 육아휴직의 사용대상 확대에 따른 실제 사용기간은 현재의 사용행태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1) 현행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의 80%가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의 시행에 따라 1인당 평균 지원단가가 상한액을 초과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부표 4] 육아휴직 연령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수급자 수(A, 명)	64,391	66,141	67,646	69,185	70,759	—	—
월평균 지원단가(B, 백만원)	1.76	1.82	1.88	1.94	2.00	—	—
지급기간(C, 개월)	8.9	8.9	8.9	8.9	8.9	—	—
추가재정소요 (D=A×B×C, 억원)	10,087	10,693	11,289	11,916	12,570	56,555	11,311

주: 1. 위 도표는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로 기준선(base-line)이 차감된 추가재정소요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장래에 발생할 행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4. 추계기간 동안 임금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토대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러나 이러한 추가재정소요는 ①학령기 아동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② 육아휴직의 사용대상 확대가 기존 수급자 수 및 지급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행태변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참고자료 II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 전망치에 지원단가 및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수) 추계기간(2025~2029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대상자 수는 최근(2019~2023년) 사용현황을 토대로 산출

[부표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 수: 2019~2023년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660	14,698	16,689	19,466	23,188
남자	742	1,639	1,632	2,001	2,415
여자	4,918	13,059	15,057	17,465	20,773

자료: 고용노동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 수는 2019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육아휴직과 별개로 독립된 1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4년간(2020~2023년) 연평균 증가율(16.4%)을 적용하여 산출

[부표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급자 전망 I: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6,582	42,586	49,576	57,713	67,185

주: 1.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행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본 추계서에서는 장래에 발생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잠재적 수요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최근 4년간(2020~2023년) 사용행태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본 추계서는 사용대상 확대라는 제도변화에 따라 증가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고용노동부의 2024년 예산 산출 근거를 준용하여 2023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사용자 수에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기간(9년) 대비 개정안에 따른 증가 기간(4년)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부표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전망Ⅱ: 2026~2030년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수급자 수(기준선, A)	36,582	42,586	49,576	57,713	67,185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 수급자 수 ($B=A \times 4/9$)	16,259	18,927	22,034	25,650	29,860

주: 행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추계기간(2026~2030년) 동안 지원단가는 2023년 기준 월평균 지원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
 - (1인당 지원단가) 연간 재정소요액을 지급인원으로 나누고, 이를 평균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산출(2023년 기준 1인당 지원단가 약 60만원)
 - ※ 집행액: 1,303억원(2023년 기준)
 - ※ 지급인원: 23,188명(2023년 기준)
 - ※ 지급기간: 9.3개월(2023년 기준)
 - 지원단가는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특성으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사회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1인당 지원단가가 명목임금 상승률을 토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부표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집행 현황: 2019~2023년

(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11	550	897	1,073	1,303

주: 집행액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대상 확대에 따른 실제 사용기간은 현재의 사용행태가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부표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수급자 수(A, 명)	16,259	18,927	22,034	25,650	29,860	—	—
월평균 지원단가(B, 백만원)	0.66	0.69	0.71	0.73	0.75	—	—
지급기간(C, 개월)	9.3	9.3	9.3	9.3	9.3	—	—
추가재정소요 (D=A×B×C, 억원)	1,004	1,206	1,449	1,741	2,091	7,491	1,498

주: 1. 위 도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변화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로 기준선(base-line)이 차감된 추가 재정소요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장래에 발생할 행태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4. 추계기간 동안 임금이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토대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명목임금상승률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러나 이러한 추가재정소요는 ①비교적 최근 도입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특성상 학령기 아동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대상 확대가 기존 수급자 수 및 지급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행태변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